

신탁계약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변경대비표

1. 투자신탁 명칭: 마이다스 기본 적격 TDF 2050 혼합자산 자투자신탁

2. 효력발생일: 2026년 09월 16일

3. 변경사유

- 모투자신탁 추가(마이다스 AI Agent 코스피 알파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갱신
- 투자위험등급 변경(4등급, 보통 위험→ 3등급, 다소 높은 위험)
- 채권평가회사 추가

4. 변경사항

가. 신탁계약서

항목	정정 전	정정 후
모투자신탁 추가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 ① 내지 ③ (생략) ④ 이 투자신탁은 법제233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자집합투자기구로서 이 집합투자기구에서 취득하는 모집합투자기구는 다음과 같다. 1. 내지 8. (생략) <신설> ⑤ (생략)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 ① 내지 ③ (현행과 같음) ④ 이 투자신탁은 법제233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자집합투자기구로서 이 집합투자기구에서 취득하는 모집합투자기구는 다음과 같다. 1. 내지 8. (현행과 같음) 9. 마이다스 AI Agent 코스피 알파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⑤ (현행과 같음)
모투자신탁 추가	제16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____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제3조제4항제1호 내지 제8호의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이하로 한다. 1-1. 제3조제4항제1호 내지 제8호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____ 한다. 다만, 2050년 1월 1일 이후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으로 한다. 1-2. 제3조제4항제1호 내지 제8호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____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로 하고, 제3조제4항제1호 내지 제8호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채무증권 투자액의 50% 이하로 한다. 1-3. 제3조제4항제1호 내지 제8호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____ 주식투자액의 100분의 80 이내, 채권의 경우 집합투자기구 채권투자액의 100분의 80 이내로 한다.	제16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____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제3조제4항제1호 내지 제9호의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이하로 한다. 1-1. 제3조제4항제1호 내지 제9호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____ 한다. 다만, 2050년 1월 1일 이후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으로 한다. 1-2. 제3조제4항제1호 내지 제9호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____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로 하고, 제3조제4항제1호 내지 제9호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채무증권 투자액의 50% 이하로 한다. 1-3. 제3조제4항제1호 내지 제9호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____ 주식투자액의 100분의 80 이내, 채권의 경우 집합투자기구 채권투자액의 100분의 80 이내로 한다.

	2. (생략)	2. (현행과 같음)
-	부칙 〈신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26년 0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나. 투자설명서

항목	정정 전	정정 후
모투자신탁 추가	<요약정보> 주요투자위험 〈신설〉	<요약정보> 주요투자위험 인공지능 모델 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대상 종목 선정 등 투자신탁의 운용과정에서 인공지능(AI) 알고리즘에 기반한 모델을 활용합니다. 이러한 모델은 실제 시장상황과 괴리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인공지능 모델과 관련된 다양한 요인들로 인하여 투자신탁의 수익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손실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모투자신탁 추가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다. 모투자신탁의 운용전문인력 〈신설〉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다. 모투자신탁의 운용전문인력 · 마이다스 AI Agent 코스피 알파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책임) 신원상 (부책임) 이천주, 김동규
모투자신탁 추가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다. 모자형 구조 〈신설〉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다. 모자형 구조 마이다스 AI Agent 코스피 알파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모투자신탁 추가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투자대상 모펀드 〈신설〉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투자대상 모펀드 마이다스 AI Agent 코스피 알파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모투자신탁 추가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신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대상] 〈신설〉 나. 투자 제한 〈신설〉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마이다스 AI Agent 코스피 알파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대상] [별첨1] 나. 투자 제한 [별첨2]
모투자신탁 추가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신설〉 <모투자신탁의 위험관리>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별첨3] <모투자신탁의 위험관리>

	<신설> 나. 수익구조 <신설>	마이다스 AI Agent 코스피 알파 증권 모투자신탁 (주식)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주식형 투자신탁으로 가격변동에 의한 손실 위험에 노출되며, 개별 주식, 파생상품의 가격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제한하기 위하여 동일 종목 투자한도 및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기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 투자제한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수익구조 마이다스 AI Agent 코스피 알파 증권 모투자신탁 (주식)
모투자신탁 추가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나. 특수위험 <신설>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나. 특수위험 인공지능 모델 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대상 종목 선정 등 투자신탁의 운용과정에서 인공지능(AI) 알고리즘에 기반한 모델을 활용합니다. 이러한 모델은 실제 시장상황과 괴리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인공지능 모델과 관련된 다양한 요인들로 인하여 투자신탁의 수익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손실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모투자신탁 추가	[제2부 별첨1]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신설>	제2부 별첨1]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별첨4]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갱신 투자위험등급 변경	<요약정보> 위험등급 4등급 [보통 위험]	<요약정보> 위험등급 3등급 [다소 높은 위험]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갱신	<요약정보> 투자비용 투자실적추이(연평균 수익률) 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갱신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갱신 투자위험등급 변경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수익률 변동성(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 18.74%, 4등급(보통 위험)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수익률 변동성(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 23.82%, 3등급(다소 높은 위험)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갱신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업데이트)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갱신	제4부 집합투자기구의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채권평가회사 추가	제4부 집합투자기구의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신설>	제4부 집합투자기구의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이지자산평가

[별첨1]

- 마이더스 AI Agent 코스피 알파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세부설명
주식	60% 이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중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에 한함)
채권	40% 이하	법 제4조 제3항에 의한 채무증권 중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이상(전자단기사채의 경우 A2-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을 제외함)
자산유동화증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어음	40% 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및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으로 취득시 신용등급이 A2- 이상인 것 및 국내에서 발행된 양도성예금증서
주식및채권관련 장내파생상품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 을 뺀 가액의 10% 이 내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가지수선물, 주식선물, 주가지수옵션, 주식옵션, 코스닥지수선물, 코스닥지수옵션, CD금리선물, 통안증권금리선물, 국채선물 및 국채선물옵션
수익증권 등	40% 이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의 경우 30% 이하)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189조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및 법 제196조에 의하여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증권의 대여 ^(주1)	보유 증권총액의 50% 이하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 ^(주1) 의 대여
환매조건부 매도	보유 채권총액의 50% 이하	환매조건부 매도란 채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함
증권의 차입 ^(주2)	20% 이하	주식, 채권, 어음 등, 자산유동화증권, 수익증권 등의 차입
신탁업자 고유 재산과의 거래		법 시행령 26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에 한함
기타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1.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 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함) 2. 금융기관 예치(만기 1 년이내인 상품에 한함) 3. 환매조건부 매수	

(주 1)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한 운용방법입니다.

가) 수익률 증진: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

나)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

(주 2) 효율적 운용,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헤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증권 차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주식 및 채권 관련 장내파생상품에의 투자는 주로 헷지 목적으로 투자하나 상황에 따라 헷지 외의 목적으로 투자(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 이내 한도) 할 수 있습니다.

※ 상기 투자대상별 투자한도는 다음의 경우 그 적용을 유예합니다.

- 1) 주식, 채권, 자산유동화증권, 어음 등, 수익증권 등에 대한 투자 한도
 -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1월간
 - 투자신탁 회계기간/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시 15일간
 - 투자신탁 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투자한도 초과시 15일간
- 2) 증권의 대여, 환매조건부매도, 증권의 차입,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에 대한 투자한도
 - 투자대상 자산의 가격변동,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등 사유로 불가피하게 투자한도 초과시 3개월까지 투자한도 적용 유예
 -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 투자한도 적용 유예

[별첨2]

- 마이더스 AI Agent 코스피 알파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투자대상 종류	투자제한의 내용	적용예외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도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83조제4항제1호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
단기대출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는 제외)에게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행위	-
동일종목 투자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음 ○ 자산총액의 100%까지 동일종목 투자가능 - 국채증권 -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 ○ 자산총액의 30%까지 동일종목 투자가능 - 지방채증권 - 특수채증권(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은 제외한다) 및 직접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 매매, 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내지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 가목 및 마목 내지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 동일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시가총액비중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지분증권의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말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한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파생상품 매매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의 100%를 초과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동일 집합투자 기구에의 투자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동일한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 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계열회사 발행 주식	법 시행령 제 86 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 단기대출, 계열회사 발행주식을 제외한 상기 투자 제한은 투자대상 자산의 가격변동,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등 사유로 불가피하게 투자한도 초과시 3개월까지 그 적용을 유예합니다.

[별첨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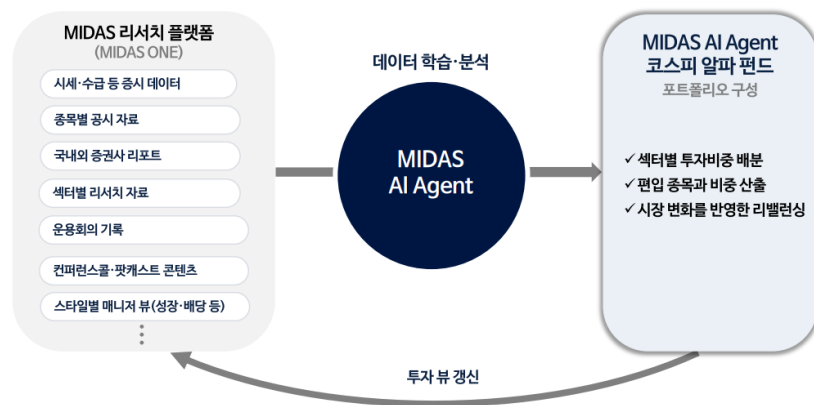
마이다스 AI Agent 코스피 알파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주요 투자대상자산>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에 집합투자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하며,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에서 자체개발한 마이다스 AI Agent를 통해 종목을 선별하여 투자합니다.

<주요 투자전략>

가. 마이다스 AI Agent는 자체 운용·리서치 플랫폼인 'MIDAS ONE^{주3)}' 내에서 기업 공시, 재무정보, 증시 데이터, 증권사 리포트, 운용사 자체 리서치 자료 등 검증된 정량·정성 데이터를 기반으로 리서치를 수행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며, 매 영업일 편입비중을 리밸런싱합니다.



나. 운용역은 마이다스 AI Agent가 리서치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며, AI Agent가 구성한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매매를 실행합니다. 다만,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운용역의 판단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 마이다스 AI Agent의 모든 리서치 및 의사결정 과정은 리서치 플랫폼 내에 기록되며, 축적된 기록은 후속 의사결정 시 참고되어 운용 프로세스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운용역의 검토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구조를 갖습니다.

라. 마이다스 AI agent는 운용역이 설계한 시장지표의 모니터링과 분석을 바탕으로 시장위험, 유동성 위험 등 위험을 사전인식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위험을 관리합니다.

<포트폴리오 예시>

No	자산구분	종목명	투자비중(%)
1	주식	삼성전자	27.92
2	주식	SK 하이닉스	22.82
3	주식	SK 스퀘어	3.11
4	주식	삼성바이오로직스	1.92
5	주식	삼성전기	1.70
6	주식	KB 금융	1.30
7	주식	현대차	1.20
8	주식	한화에어로스페이스	1.15
9	주식	신한지주	1.06
10	주식	LG 에너지솔루션	1.02

[별첨4]

(9) 마이다스 AI Agent 코스피 알파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1.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주식형 펀드로서 자산의 대부분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여 종합주가지수 이상의 운용 성과 달성을 주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 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세부설명
주식	60% 이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중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에 한함)

채권	40% 이하	법 제4조 제3항에 의한 채무증권 중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이상(전자단기사채의 경우 A2-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을 제외함)
자산유동화증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어음	40% 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및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으로 취득시 신용등급이 A2- 이상인 것 및 국내에서 발행된 양도성예금증서
주식및채권관련 장내파생상품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 을 뺀 가액의 10% 이 내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가지수선물, 주식선물, 주가지수옵션, 주식옵션, 코스닥지수선물, 코스닥지수옵션, CD금리선물, 통안증권금리선물, 국채선물 및 국채선물옵션
수익증권 등	40% 이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의 경우 30% 이하)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189조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및 법 제196조에 의하여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증권의 대여 ^(주1)	보유 증권총액의 50% 이하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
환매조건부 매도	보유 채권총액의 50% 이하	환매조건부 매도란 채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함
증권의 차입 ^(주2)	20% 이하	주식, 채권, 어음 등, 자산유동화증권, 수익증권 등의 차입
신탁업자 고유 재산과의 거래		법 시행령 26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에 한함
기타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1.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 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함) 2. 금융기관 예치(만기 1 년이내인 상품에 한함) 3. 환매조건부 매수	

(주 1)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한 운용방법입니다.

다) 수익률 증진: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수수료 수익을 추구

라)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

(주 2) 효율적 운용,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헤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증권 차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주식 및 채권 관련 장내파생상품에의 투자는 주로 헷지 목적으로 투자하나 상황에 따라 헷지 외의 목적으로 투자(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 이내 한도) 할 수 있습니다.

※ 상기 투자대상별 투자한도는 다음의 경우 그 적용을 유예합니다.

- 1) 주식, 채권, 자산유동화증권, 어음 등, 수익증권 등에 대한 투자 한도
 -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1월간
 - 투자신탁 회계기간/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시 15일간
 - 투자신탁 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투자한도 초과시 15일간
- 2) 증권

- 투자대상 자산의 가격변동,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등 사유로 불가피하게 투자한도 초과시 3개월까지 투자한도 적용 유예
-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 투자한도 적용 유예

나.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투자대상 종류	투자제한의 내용	적용예외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도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83조제4항제1호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
단기대출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는 제외)에게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행위	-
동일종목 투자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음 ○ 자산총액의 100%까지 동일종목 투자가능 - 국채증권 -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 ○ 자산총액의 30%까지 동일종목 투자가능 - 지방채증권 - 특수채증권(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은 제외한다) 및 직접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 4 조 제 3 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 매매, 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 가목내지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법 시행령제 79 조제 2 항제 5 호 가목 및 마목 내지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시행령제 79 조제 2 항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 동일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시가총액비중이 100 분의 10 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지분증권의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 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말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 개월간 적용한다.	최초설정일로부터 1 개월간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 분의 20 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파생상품 매매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동일 집합투자기구에의 투자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 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영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동일한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 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계열회사 발행주식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법 시행령 제 86 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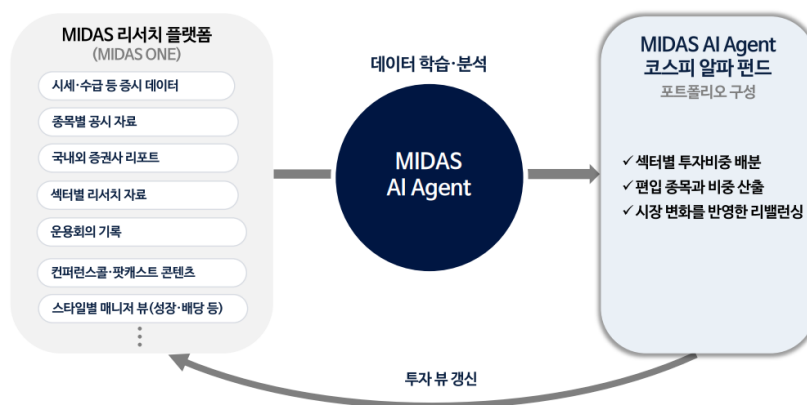
※ 단기대출, 계열회사 발행주식을 제외한 상기 투자 제한은 투자대상 자산의 가격변동,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등 사유로 불가피하게 투자한도 초과시 3개월까지 그 적용을 유예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및 수익구조

가. 투자 전략

-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에 집합투자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하며,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에서 자체개발한 **마이다스 AI Agent**를 통해 종목을 선별하여 투자합니다.

가. 마이다스 AI Agent 는 자체 운용·리서치 플랫폼인 ‘MIDAS ONE’^{주)} 내에서 기업 공시, 재무정보, 증시 데이터, 증권사 리포트, 운용사 자체 리서치 자료 등 검증된 정량·정성 데이터를 기반으로 리서치를 수행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며, 매 영업일 편입비중을 리밸런싱합니다.



나. 운용역은 마이다스 AI Agent가 리서치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며, AI Agent가 구성한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매매를 실행합니다. 다만, 시장상황을 감

안하여 필요한 경우 운용역의 판단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 마이다스 AI Agent의 모든 리서치 및 의사결정 과정은 리서치 플랫폼 내에 기록되며, 축적된 기록은 후속 의사결정 시 참고되어 운용 프로세스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운용역의 검토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구조를 갖습니다.

라. 마이다스 AI agent는 운용역이 설계한 시장지표의 모니터링과 분석을 바탕으로 시장위험, 유동성 위험 등 위험을 사전인식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위험을 관리합니다.

- 운용 프로세스

마이다스 AI agent는 다음과 같은 운용 프로세스(①~④)를 수행하며 운용역은 ⑤ 점검 및 매매를 수행합니다.

① 성과 및 현황 리뷰: 전일 업데이트된 시황 등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의 맥락을 복기하고, 펀드 성과 및 섹터/종목별 기여도와 비중 등을 점검합니다.

② 리서치: MIDAS ONE 플랫폼을 통해 주식운용 인력과 동일한 리서치 데이터들을 검토하며, 각종 증시·재무 데이터, 내부/외부 리서치 자료 등 200 건 이상의 자료를 매일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특히 편입 중인 종목의 경우 수집 가능한 데이터를 모두 확인합니다.

③ 섹터/종목 분석:

▶ 섹터: 당일 리서치 내용을 기존의 섹터별 투자관점에 반영하여 갱신 및 재평가하며, 평가결과를 섹터 및 테마 비중 리밸런싱 의사결정의 근거로 활용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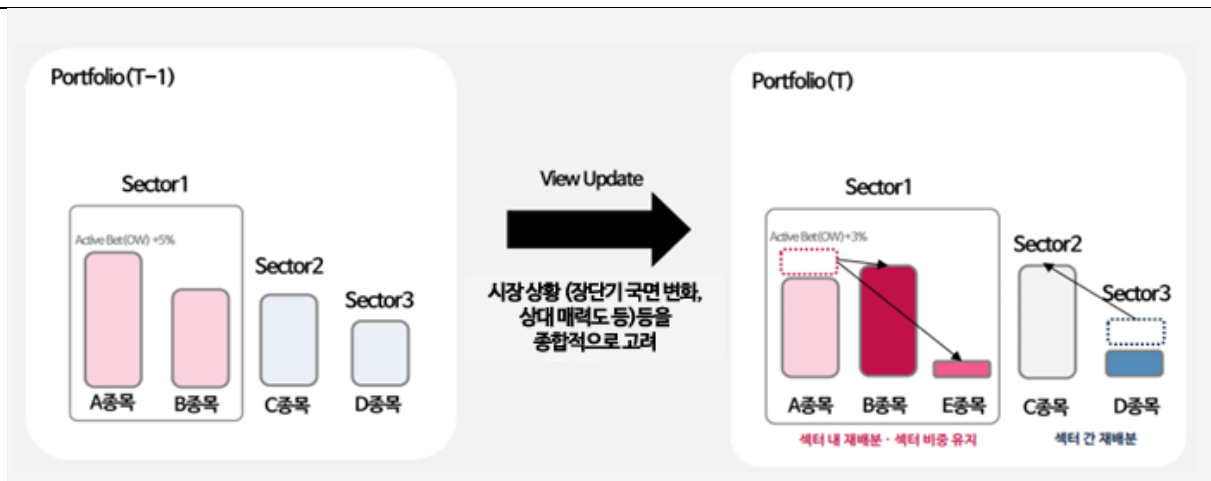
▶ 종목: 당일 리서치 내용을 종목별 BASM/SWOT 분석법에 의거한 투자관점에 반영하여 갱신 및 재평가하며, 평가결과를 종목 신규 편입 / 편출 / 편입비 조정의 근거로 활용합니다.

※ BASM(Business Model, Assumption, Strategy, Management) 분석: BASM 분석이란 기업의 사업모델(Business Model), 미래 실적에 대한 가정(Assumption), 실행 전략(Strategy), 경영진(Management)의 네 가지 관점에서 기업의 본질적 경쟁력과 이익창출의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는 정성적 기업분석 기법입니다. 재무 수치에 드러나지 않는 기업의 질적 요소를 심층 분석하여 장기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별하는 데 활용됩니다.

※ SWOT(Strength, Weakness, Opportunity, Threat): SWOT 분석이란 기업 내부의 강점(Strength)과 약점(Weakness), 외부 환경의 기회(Opportunity)와 위협(Threat)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기업분석 기법입니다. 기업이 보유한 경쟁우위와 취약점, 그리고 시장-정책 등 외부 환경 변화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균형 있게 점검하여 투자 매력도와 리스크를 판단하는 데 활용됩니다.



④ 포트폴리오 구성: 업데이트 된 투자판단을 기반으로 포트폴리오 내 종목을 '비중 축소·편출 대상' 종목과 '비중 확대·편입 대상' 종목으로 구분하고 리밸런싱을 수행합니다. 비중 배분은 시장 환경과 상대 매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연하게 수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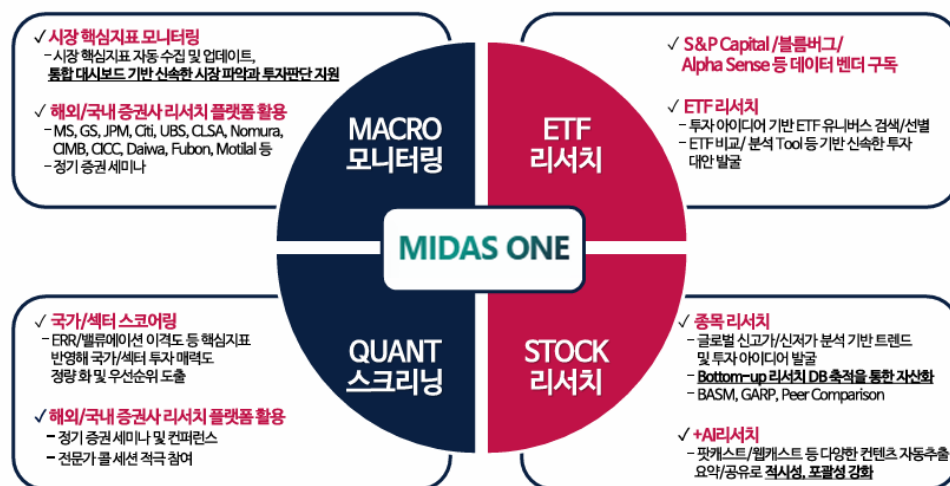


※ 포트폴리오 예시 (보유종목 Top 10 - 2026년 7월 31일 기준)

No	자산구분	종목명	투자비중(%)
1	주식	삼성전자	27.92
2	주식	SK 하이닉스	22.82
3	주식	SK 스퀘어	3.11
4	주식	삼성바이오로직스	1.92
5	주식	삼성전기	1.70
6	주식	KB 금융	1.30
7	주식	현대차	1.20
8	주식	한화에어로스페이스	1.15
9	주식	신한지주	1.06
10	주식	LG 에너지솔루션	1.02

⑤ 점검 및 매매: 운용역은 마이다스 AI agent가 판단한 포트폴리오 구성과 투자 근거·리스크 가능성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종 매매를 수행합니다.

주) MIDAS ONE 플랫폼: 운용에 필요한 모든 기능을 구현 및 자동화하여 운용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강화한 당사 자체 개발 AI 리서치 운용 플랫폼입니다.



- **비교지수:** 이 집합투자기구는 자체개발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국내 기업에 주로 투자하므로 일반 주식 시장과 상이한 수익률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증권시장 대비 성과를 위해서 **KOSPI**를 비교지수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비교지수 변경시에는 법 제 89 조제 2 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의 본 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본 투자전략을 통하여 이 투자신탁의 수익률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이 반드시 수행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AI Agent 란?

AI(Artificial Intelligence) Agent란 정해진 목표 아래 스스로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판단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자율형 인공지능을 의미하며, 단순히 질의에 응답하는 기존 AI와 달리, 방대한 시장 정보를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분석부터 실행까지의 과정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나. 위험 관리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주식형 투자신탁으로 가격변동에 의한 손실 위험에 노출되며, 개별 주식, 파생상품의 가격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제한하기 위하여 동일 종목 투자한도 및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기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 투자제한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수익 구조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주식형 투자신탁으로, 투자대상 주식의 가격 등락이 투자 손익을 결정하는 주요인입니다. 즉, 투자하는 주식의 가격이 상승할 경우 이익이 발생하며, 투자하는 주식의 가격이 하락할 경우 손실이 발생합니다. 한편 투자대상 주식으로부터의 배당 수익, 채권 및 유동성자산 투자분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도 투자신탁 수익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다. 간이투자설명서

항목	정정 전	정정 후
모투자신탁 추가	주요투자위험 <신설>	주요투자위험 인공지능 모델 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대상 종목 선정 등 투자신탁의 운용과정에서 인공지능(AI) 알고리즘에 기반한 모델을 활용합니다. 이러한 모델은 실제 시장상황과 괴리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인공지능 모델과 관련된 다양한 요인들로 인하여 투자신탁의 수익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손실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갱신	투자비용 투자실적추이(연평균 수익률) 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갱신 투자위험등급 변경	위험등급 4등급 [보통 위험]	위험등급 3등급 [다소 높은 위험]